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30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오세희·서영교·채현일

박용갑・박지원・김동아

이병진 • 전진숙 • 전현희

강준현 · 허성무 · 김문수

문금주 • 이광희 • 송재봉

신정훈 · 조인철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 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유통만 하는 제품을 구매한경우 등이 포함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취지가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		
	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		
	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		
	는 공사를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